

이 보도자료는 2018. 5. 29.(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 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검찰</b> PROSECUTION SERVICE	<b>대전지방검찰청</b> 공보담당관 자장검사 권정훈 전화 042-470-4302 / 팩스 042-470-4222	<b>보도자료</b> 2018. 5. 29.(화)
		자료문의 : 특허범죄조사부장실 전화번호 : 042-470-4303 주책담당자 : 특허범죄조사부장 김옥준

<b>제 목</b>	<b>가상화폐 거래소, 쇼핑몰 외관을 만들어 가상화폐 판매대금 30억 원 편취한 거래소 운영자 2명 불구속기소</b>
------------	---

■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옥준)는 2017. 9.경부터 2018. 1.경 까지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아니한 가상화폐 거래소, 쇼핑몰 등의 외관을 만들고 사실상 가치 없는 가상화폐를 발행하여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속칭 ‘폰지 (ponzi) 사기’를 통해 **고령자 등 피해자 568명 상대로 약 30억 원을 편취한 거래소 운영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하여 블록체인 기술과 무관한 사업 운영에 ‘○○ 코인’을 발행하고, 다단계 방식 등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사기 범행이 적발되고 있으므로 피해 예방을 위해 가상화폐 구입 시 발행자들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이 높음을 확인함

■ 대전지검은 앞으로도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한 범행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I 사건개요 및 수사경과

### ① 사건개요

- 피의자
  - ㄱ○○(57세, ○○그룹 회장, D쇼핑몰 대표, 불구속 기소)
  - ㄴ○○(56세, ○○그룹 대표, C거래소 실질적 운영자, 불구속 기소)
- 범죄사실 요지
  - '17. 2. ~'18. 1.경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화폐 사용 인터넷 쇼핑몰 등의 외관을 만든 후, 일부는 다단계 방식으로, 일부는 원금 보장을 약정하면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될 수 없는 가상화폐 A코인, B코인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568명, 총 1,016회, 합계 약 30억 2천만 원을 받아 편취 등[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② 수사경과

- '18. 1. 11. 금융감독원 수사의뢰
  - A코인, B코인이 곧 C거래소에 상장될 것이고, D쇼핑몰에서 현금처럼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 가격이 수십 배 오른다며 투자금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첩보 접수, A코인은 폐기코인, B코인은 거래내역 없음을 확인)
  - ※ 2018. 1. 25.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폭로! 암호화폐 위험한 현장'편 보도
- '18. 1. 16.~3. 4. 계좌추적, 사무실 압수수색, 피의자 및 관련자 조사 등
- '18. 3. 5.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3. 7. 법원 기각
- '18. 3. 7.~5. 27. 보완수사
- '18. 5. 28. 피의자들 불구속 기소

1) B코인은 이더리움 기반 ERC20 토큰(가상통화 이더리움에 기반한 가상통화의 일종, 제작의 용이성으로 인해 시중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통화 대다수가 ERC20토큰이고, 현재 빗썬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통화 29개 중 16개가 ERC20 토큰 형태임)이고, 이더스캔(<https://etherscan.io>)을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해보니 구매자는 수백명에 이름에도 총 소유자는 2명이고 거래횟수가 총 4회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 II 범행 수법

### ① A코인, B코인은 사실상 무가치하고, C거래소, D쇼핑몰은 실질적으로 거래가 없어 외관만 만든 것임

- **A코인**은 블록체인의 블록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고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폐기코인이고, **B코인**은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된 사업 등 토큰 활용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사실상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움
- **C거래소**는 국내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일부 코인이 상장되어 있을 뿐 사실상 거래가 없고, **D쇼핑몰**에는 코인 거래 기능도 기술적으로 구현되지 않았고, 실제 거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② 후순위 소액 투자자들의 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여 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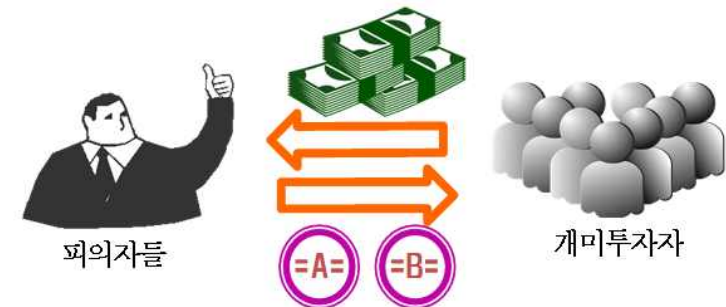
-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모르는 고령자 등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만든 거래소에 상장하면 코인 가격이 단기간에 상승하여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기망
- 그러나 후순위 투자자가 없자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거래도 없어 피해자들은 전산상의 숫자만 보유하는 피해를 입음 (별지 범행 구조도 참조)

## III 참고사항 및 향후 계획

- 가상화폐가 ERC20 토큰 형태로 유통되고 있고, 판매자들이 막연한 사업 방향만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상화폐 구입 시 가상화폐를 활용한 사업 내용,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 있음
- ※ ERC20토큰은 약 4분, 1만원이면 수백 억 개라도 쉽게 만들 수 있음
- 대전지검은 사업 초기에 신속한 수사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였고, 앞으로도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한 범행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끝.

별지

## 범행 구조도



- ① 가상화폐 발행, 판매  
(약 1만 원, 4분이면 몇백억개도 제작 가능한 ERC20토큰 발행, 판매가격과 판매량 임의로 지정)

코인	금액	거래량
B코인	100	0
C코인	200	0
이더리움	1000	0



- ② 가상화폐 거래소 제작  
(피의자들 제작 코인의 국내에서 거래되지 않는 일부 코인 상장되어 있을 뿐 실제 코인 거래 사실상 없음)
- ③ 온라인 쇼핑몰 제작  
(일부 상품 코인 가격표시되어 있으나, 코인으로 사실상 물품 구매 곤란)